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신종MMF(S-52호)

2. 주요 변경내용
   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 종류 C, C-E, C-P2, C-P2E 신설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8. 06. 08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추가>	종류 C : CA742 종류 C-E : CA743 종류 C-P2 : CA805 종류 C-P2E : CA744
제2조(용어의 정의)	<추가>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 4. (생략, 현행과 동일) 5. 종류형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C 수익증권 : 법인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종류 C-E 수익증권 : 법인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3. 종류 C-P2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4. 종류 C-P2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8 조 (신탁금의 납입)	② (생략)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현행과 동일)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C 수익증권 2. 종류 C-E 수익증권 3. 종류 C-P2 수익증권 4. 종류 C-P2E 수익증권 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생략)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①(생략, 현행과 동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

		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7조 (수익자총회)	<신설>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9조 (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3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78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3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78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3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9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 C-P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3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4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 C-P2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36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2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신설>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I.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분류
<추가></td><td>분류
종류형</td></tr>
<tr><td>I.집합투자기구의 개요</td><td>
<table>
<tr><td colspan="2">가입자격</td><td>법인투자자</td></tr>
<tr><td colspan="2">판매수수료</td><td>없음</td></tr>
<tr><td colspan="2">환매수수료</td><td>없음</td></tr>
<tr><td rowspan="6">보수(연, %)</td><td>운용</td><td>0.0336</td></tr>
<tr><td>판매</td><td>0.0784</td></tr>
<tr><td>신탁업자</td><td>0.0200</td></tr>
<tr><td>일반사무</td><td>0.0180</td></tr>
<tr><td>기타</td><td>0.0043</td></tr>
<tr><td>총보수·비용</td><td>0.1543</td></tr>
</table>
</td><td>
<table>
<tr><td colspan="2">Class</td><td>C</td><td>C-E</td><td>C-P2</td><td>C-P2E</td></tr>
<tr><td colspan="2">가입자격</td><td colspan="4">법인투자자
법인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법인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td></tr>
<tr><td colspan="2">판매수수료</td><td colspan="4">없음</td></tr>
<tr><td colspan="2">환매수수료</td><td colspan="4">없음</td></tr>
<tr><td rowspan="6">보수(연, %)</td><td>운용</td><td>0.0336</td><td>0.0336</td><td>0.0336</td><td>0.0336</td></tr>
<tr><td>판매</td><td>0.0784</td><td>0.0392</td><td>0.0242</td><td>0.0121</td></tr>
<tr><td>신탁</td><td>0.0200</td><td>0.0200</td><td>0.0200</td><td>0.0200</td></tr>
<tr><td>일반사무</td><td>0.0180</td><td>0.0180</td><td>0.0180</td><td>0.0180</td></tr>
<tr><td>기타</td><td>0.0043</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총보수·비용</td><td>0.1543</td><td>0.1108</td><td>0.0958</td><td>0.0837</td></tr>
</table>
</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석 추가></td><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주3) 종류 C의 수익률이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td></tr>
</table>

		바랍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추가>	**1. 과세**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 C-P2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변경에 따른 C, C-E, C-P2, C-P2E 코드 기재>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 CA742 C-E CA743 C-P2 CA805 C-P2E CA74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변경에 따른 C, C-E, C-P2, C-P2E 코드 기재>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 CA742 C-E CA743 C-P2 CA805 C-P2E CA74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8 년 06 월 08 일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종류 C, C-E, C-P2, C-P2E 신설
제2부 집합투자기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table>
<tr><td>구에 관한 사항</td><td>(생략)</td><td>(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법인투자자

<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법인투자자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별첨 1></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가입대상
-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종류형 가입자격 내용 추가></td><td>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가입대상
-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만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구분</th><th>가입자격</th></tr>
<tr><td>C</td><td>법인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r><td>C-E</td><td>법인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td></tr>
<tr><td>C-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td></tr>
<tr><td>C-P2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td></tr>
</table></td></tr>
<tr><td></td><td>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주석추가></td><td>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주 2)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종류별로 부과되는 판</td></tr>
</table>

		매보수・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별첨 2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별첨 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나. 과세 <추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현행과 동일) 나. 과세 (4)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또는 15%)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석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주1) 상기 수익률은 종류 C 수익증권의 수익률입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추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첨1>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판매보수	환매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C	법인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연 0.0784%	없음	없음
C-E	법인 전용으로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연 0.0392%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연 0.0242%		
C-P2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연 0.0121%		

<별첨2>

변경전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가입대상	**법인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0336%	매6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784%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보수합계	0.1500%	
기타비용주1)	0.0043%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주2)	0.1543%	
증권 거래비용주3)	0.0008%	사유발생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1,000원)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신종MMFS-52	15	49	85	194

변경후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C, C-E, C-P2, C-P2E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C	종류 C-E	종류 C-P2	종류 C-P2E	
집합투자업자보수	0.0336	0.0336	0.0336	0.0336	매 6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784	0.0392	0.0242	0.0121	
신탁업자보수	0.0200	0.0200	0.0200	0.02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0.0180	0.0180	
보수합계	0.1500	0.1108	0.0958	0.0837	
기타비용주 1)	0.0043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주 2)	0.1543	0.1108	0.0958	0.0837	
증권 거래비용주 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1,000원)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C	16	50	87	199
종류 C-E	11	36	63	143
종류 C-P2	10	31	54	123
종류 C-P2E	9	27	47	108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코리아배당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8년 06월 08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3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33%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 행과 동일) <삭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8년 06월 08일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3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2.33%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 행과 동일) <삭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Smart Up Plus포커스포트폴리오 증권투자신탁(제5호)[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8년 06월 08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4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28%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 행과 동일) <삭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8년 06월 08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41%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1.28%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생략, 현행과 동일)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추가)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인프라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8년 06월 08일

4. 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8 년 06 월 08 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